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79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4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신한투자증권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2.10.17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

\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제1호